

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

담당자		전화번호	처리일자
선박의 소유자 (점유자)	성명(상호)	생년월일(성별)	
	전화번호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
선박제원	선명(명칭)	선박(어선)번호	
	선적항	톤수(주요치수)	
발견 장소			
공유수면관리청			관리번호 제 - 호
조사사항	조사일	조사자	
	조사내용		
의견		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.

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(공유수면관리청)

직인

유의사항

-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(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)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이 별지에서 “공유수면관리청”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